

선 람	기 관 의 장

공보는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발행·편집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48452)  
☎ 607-4071 / FAX 607-4719

## 고 시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3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 공 고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461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4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9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466호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공 람									
--------	--	--	--	--	--	--	--	--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30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일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71번길 29 외 6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산127-5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71번길 29(대연동)	2024.3.22.	신축	2010.1.7.	못골번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57-2	부산광역시남구 용호로231번길 128-48	2024.3.22.	신축	2023.3.8.	용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5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66-42(용호동)	2024.3.22.	신축	2009.12.24.	옛 지명으로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 모양의 영전이 있는 갯벌
4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241-7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대산북로174번길 280	2024.3.22.	신축	2009.12.24.	신선대산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70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대산북로174번길 78 (용당동)	2024.3.22.	신축	2009.12.24.	신선대산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7-45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250 (우암동)	2024.3.22.	신축	2009.12.24.	주변 동제당 위치
7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23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274-13 (문현동)	2024.3.22.	신축	2009.7.8.	부산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부산진구와 남구를 연결해줄

○ 도로명주소 폐지: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 25 외 15건

연번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1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 25 (대연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2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 25-1 (대연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3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27번길 22 (대연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4	부산광역시 남구 조각공원로27번길 25 (대연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5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447번길 75-17 (대연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6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75-4 (대연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7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284번길 33 (우암동)	2024.3.22.	건축물 해제공사로 인한 건물번호 폐지
8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47번길 35 (문현동)	2024.3.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9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47번길 41-4 (문현동)	2024.3.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10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47번길 53 (문현동)	2024.3.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11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59번길 62 (문현동)	2024.3.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12	부산광역시 남구 고동골로59번길 94 (문현동)	2024.3.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13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40번길 22 (문현동)	2024.3.22.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1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3번길 39 (문현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15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3번길 41 (문현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16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3번길 6-19 (문현동)	2024.3.22.	건축물 해체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의18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4-461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부자 예우 시책 추가(안 제5조제3호)
  -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근거조항 추가(안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5층 행정지원과(대연동, 남구청)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전화번호 : 051) 607-4124 (Fax. 607-4109)
- 이 메 일 : joya1002@korea.kr

붙임 :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를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 1.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호부터 제11호----- ----- -----.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4. ~ 6. (생략) ② (생략)	제5조(기부자 예우) ① ----- -----. 1.·2. (현행과 같음) 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기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465호

##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1.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증진과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 나.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라.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마. 중복지원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6조, 안 제9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 보내실 곳

- 주소 :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5층 행정지원과(대연동, 남구청)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 전화번호 : 051) 607-4114 (Fax. 607-4109)
- 이 메 일 : kmchelper84@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부산남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법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법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3.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법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4. 그 밖에 방법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방법대원의 구성 현황 및 전년도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법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법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방법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법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방법대등의 방법활동 실적 및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법대등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대원 또는 방법대등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5조까지(자율방법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자율방법대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0000년도)

단 체 명	○○○자율방법대	회원수	명
신청금액	₩ 원 (금 원)	○○비	원
		○○비	원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직위 : )		
사업내용	사업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활동	
	사업계획	◦ 순찰계획, 지원금 사용계획 등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자율방법대·연합대 대장 (인)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 ○○○ 자율방범대·연합대 지원금 정산서 (0000년도)

##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비					
○○비					

\* 비목별 작성 : 용품비, 간식비 등

## 2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액	산출내역	지급처	비 고
					○○비
계					

☞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

○○○ 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

인

### 남 구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 사본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4-466호

##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지역축제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보완(안 제8조의2)
-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규정 보완(안 제8조의2)
-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 강화(안 제8조의2)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51) 607-4064 (Fax. 607-4069)
- 이 메 일 : ebbirkd@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



	<p>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p> <p>4.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p> <p>5. <u>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u></p>
--	----------------------------------------------------------------------------------------------------------------------------------------------------------------------------------------------------------------------------------------------------------------------------------------------------------------------------------------------------------------------------------------------------------------------------------------------------------------------------------------------------------------------------------------------------------

	<p><u>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u></p> <p><u>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p> <p>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	------------------------------------------------------------------------------------------------------------------------------------------------------------------